

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6조 제1항·제9조제1항·제15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·형식승인의 변경·성능인증 및 성능인증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과 같은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수출용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합격표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2. 11. 1., 2017. 12. 28.>

제2조(견품수량) ① 「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6조의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규칙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나 형식승인의 변경 및 시험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적용시험에 필요한 수량을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2. 9.>

② 규칙 제15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 또는 성능인증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은 별표 2와 같다. 다만, 성능인증을 변경하거나 시험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

우에는 적용시험에 필요한 수량을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2. 9.>

제3조(수출용 소방용품의 합격표시 등)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수출용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합격표시 방법은 별표 3과 같다. <개정 2012. 2. 9.>

제4조(재검토기한) 소방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4. 21., 2016. 1. 11., 2017. 12. 28., 2021. 9. 30.>

제5조 <삭제 2019.1.24.>

부 칙 <제2026-10호, 2026.5.4.>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의 중요한 변경사항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견품수량(제2조제1항 관련) <개정 2017.12.28., 2019.12.23., 2021.9.30., 2022.08.04., 2023.8.10., 2025.12.1.>

구분		견품의 종류	견품의 수량
소 화 기 및 주 거 용 주 방 자 동 소 화 장 치	공통	금속부식시험편	해당되는 것 5개
		(물·강화액·침윤제 소화기에 한한다)	
		부분품	1조
	소 화 기	휴대식	완성품 15개 (보통화재·유류화재·전기화재 중 2종류 이상의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표기하는 것은 20개)
		멜빵식	완성품 15개 (보통화재·유류화재·전기화재 중 2종류 이상의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표기하는 것은 20개)
		차륜식	완성품 8개
		소화약제	10개 (보통화재·유류화재·전기화재 중 2종류 이상의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표기하는 것은 20개)
		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	10개 (보통화재·유류화재·전기화재 중 2종류 이상의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표기하는 것은 20개)

	주거용주방자동 소화장치	완성품	20개
소 화 약 제	분말·할로겐화합물 등	완성품	20kg
	포소화약제 및 침윤 소화약제 등	완성품	40 ℓ (20 ℓ 2통)
		강철 등의 부식에 의한 중 량손실 시험편	1조
간 이 소 화 용 구	공통	내식도료 시험편 (가로 5cm × 세로15cm)	두께 0.3mm의 것 5개 당해 소화용구 도장과 동일한 두께의 것 15개
		부분품	1조
	투척용소화용구	완성품	20개
	에어줄식소화용 구	완성품	20개 (소화시험의 신청모형이 1을 초과하는 경우는 1을 초과할 때마다 6개를 가산한 수량)
	소공간용 소화용구	완성품	30 개
자동확산소화기		완성품	20개
		부분품(시험편 등)	각2개
가스·분말자동소화 장치		완성품	30개
		부분품(시험편 등)	각2개
고체 에어 로줄 자동 소화 장치	패키지용	완성품	30개
	및 등급용	부분품(시험편 등)	각2개
	설비용	완성품(고체 에어로줄발생 기등)	용량별 각 30개
		부속품(수신기등)	각 1조
		설계매뉴얼	2 세트
방염제		완성품	20 ℓ (분말 고품인 경우 1kg)
		시험포 또는 시험판	3m²
차동식 또는 보상식 스포츠형 감지기		완성품	12개

차동식분포형감지기	완성품 (별도의 작동표시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동표시장치 포함)		12개 (최대사용길이를 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대사용길이 1개)
	공기관 (공기관식에 한함)		- 중앙을 접속관으로 접속한 전장 35cm인 것 10개 - 최대사용길이의 것 1개
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	완성품 (P형수신기 이외의 작동표시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시장치 포함)		51m (최대사용길이를 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대사용길이 1개)
정온식스포츠형감지기	완성품		12개(비재용형은 18개)
이온화식감지기	완성품		12개
광전식감지기	완성품		12개 (공기흡입형의 공기흡입배관은 1m의 것 12개와 최대사용길이의 것 1개만 제출 가능)
복합형감지기	완성품		12개(비재용형은 18개)
	발광소자 및 수광소자(광전식감지기로 복합된 경우에 한함)		각 3개
단독경보형감지기	완성품 (건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건전지 포함)		12개
	부 분 품	음향장치	각 3개
		예비전원 (예비전원이 설치된 것에 한함)	

불꽃감지기	완성품	12개	
발신기	완성품	6개	
	보호판 등 작동시 파손되는 부분품의 교체용 부품 (파손되는 구조인 것에 한 함)		각 12개
경종	완성품	6개	
중계기	완성품		15회선분 이상(3대 이상일 경우에는 3대)
	부분품	전자계전기	해당되는 것 각 3개
		스위치	
		지시전기계기	
		예비전원	
		전원변압기	
수신기	완성품		20회선분 이상(4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대). <단서 삭제>
	부 분 품	종단기	해당되는 것 각 3개
		표시등 광원	
		전자계전기	
		음향장치	
		예비전원	
		스위치	
		지시전기계기	
		전원변압기	
	캐비닛형자동소화장 치	완성품	
부분품		종단기	해당되는 것 각 3개
		표시등 광원	
		전자계전기	
		음향장치	
		예비전원	
		스위치	
		지시전기계기	
		전원변압기	

누전경보기	변류기	완성품		6개
	수신부	완성품		6회선분 이상(단, 2대 이상일 것)
		부분품	표시등 광원	해당되는 것 각 3개
			전자계전기	
			음향장치	
			스위치	
			지시전기계기	
	전원변압기			
가스누설경보기	완성품		6회선분 이상(단, 2대 이상일 것)	
	부분품 및 시험편	감지소자	해당되는 것 각 3개	
		전자계전기		
		표시등 광원		
		스위치		
		전원변압기		
		음향장치		
		예비전원		
유도등 및 비상조명 등	완성품		3개	
	부분품	표시등 광원	해당되는 것 각 3개	
		전자계전기		
		스위치		
		변압기		
		예비전원		
		안정기		
		점등광원		
		퓨즈		
		표시면시험편		
피난사다리	완성품		5개	
	부분품 및 시험편	내식시료	각 3개	
		(길이 1m) 훅크		
		인장강도시험편	각 4개	
완강기 및 간이완강기	완성품(15미터로프, 최대 사용로프 및 훅크 첨부)		5개	
	인장강도시험편		각 4개	

구조대	완성품		1대
	부분품 및 시험편	포지 (1m×1m)	6개
		로우프 및 벨트(사 용하지 않는 구조 대는 제외)	각 2개
		지지틀	1개
		인장강도시험편	각 4개
스프링클러헤드	완성품		폐쇄형 66개 (퓨지블링크형의 경우 76개) 개방형 25개
	인장강도시험편		각 4개
유수검지장치 및 일 제개방밸브	완성품		5개 (안지름이 100mm이상인 것은 2개)
	인장강도시험편		각 4개
소방호스	완성품 (결합금속구 장착)		15본(호칭 75이상인 것은 10본)
가스관선택밸브 및 기동용수압개폐장치	완성품		5개
	부분품		1조
	인장강도시험편		각 4개
공기호흡기	완성품		4개
	부분품		1조
	인장강도시험편		각 4개
관창·소화전(옥내소 화전방수구)	완성품		10개
소화전(옥외소화전)	완성품		5개 (C형 및 D형은 2개)
완강기지지대	완성품		5개
	인장강도시험편 등		각 3개
공기호흡기의 충전기	완성품		1대
	부분품		1조

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성능인증의 중요한 변경사항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견품수량(제2조제2항 관련)<개정 2013.11.13., 2015.1.15., 2016.1.11., 2017.12.28., 2019.12.23., 2022.08.04., 2023.8.10., 2025.12.1., 2026.5.4.>

구분	견품의 종류		견품의 수량
축광표지	완성품		10 개
예비전원	완성품(정격용량별)		6 조
비상콘센트설비	완성품		3 개
	부분품	스위치	각 3 개
		콘센트	
표시등	완성품		10 개
	광원		5 개
소화전함	완성품		5 개 (지하소화장치함의 경우 3개)
	금속시험편	인장강도	각 4 개
		내식시험	1개
	고무시험편	인장강도 (노화전, 후)	각 4개
		내유성	각 4개
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	완성품		20 개
	강도시험시험편		1 개
소방용전선	완성품		10 m
	취리즈 시험편	<삭 제>	10개 이상 (ASTM E 662에 따른 시험 가능 시험편 개수일 것
		<삭 제>	<삭 제>
	난연성능 시험편		2개 이상 (KS C IEC 60332

			-3-24에 따른 시험 가능 시험편 개수일 것)
탐지부	완성품		6 개
	탐지소자		각 3 개
지시압력계	완성품		30 개
	인장강도시험편(필요 시)		각 4 개
방염제품	완성품 또는 직물		5개 또는 20 m
비화재보방지기	완성품		<삭 제>
	부 분 품	전자계전기	<삭 제>
		전원변압기	
		지시전기계기	
		예비전원	
공기안전매트	완성품		1 개
	포지		1 m × 2 m
소방용밸브	완성품		2 개
	부분품		1조
	인장강도시험편		각 4 개
소방용스트레이너	완성품		2 개
	부분품		1조
	인장강도시험편		각 4 개
소방용압력스위치	완성품		15 개
소방용합성수지배관	완성품		50 m
	인장강도시험편		각 4 개
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	완성품		1 대
	예비전원		각 3 개
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	완성품		1 대
	부분품	전원변압기	해당부품 각 3 개
		예비전원	
소화설비	물분무헤드	완성품	10 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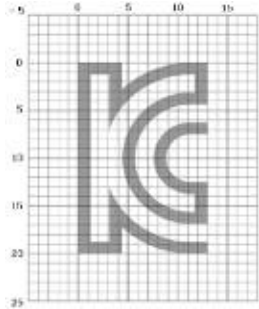
용 헤드		인장강도시험편		각 4 개
	포 헤드	완성품		10 개
		인장강도시험편		각 4 개
	분말헤드	완성품		10 개
		인장강도시험편		각 4 개
	살수헤드	완성품		25 개
		인장강도시험편		각 4 개
	미분무헤드	완성품	폐쇄형	50 개
			개방형	25 개
		인장강도시험편		각 4 개
	압축공기	완성품		10 개
	포 헤드	인장강도시험편		각 4 조
	가스계소 화설비헤드	완성품		10개
		인장강도시험편		각 4 개
소방용 흡수관		완성품		5 개
		인장강도시험편		각 4 개
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		완성품		15 개
		부분품		1 조
방수구		완성품		10 개
		인장강도시험편		각 4 개
분기배관		완성품		5 개
		인장강도시험편 등		각 4 개
포소화약제 혼합장치등	포소화약제	완성품		1 개
	의 혼합장치	인장강도시험편 등		각 1 조
	압축공기포 혼합장치	완성품		1 개
		인장강도시험편 등		각 1 조
시각경보장치		완성품		6 개
자동차압급기댐퍼		완성품		5 개
		인장강도시험편 등		각 3 개
자동 폐쇄장치		완성품		5 개
가압수조식		완성품		1 개

가압송수장치		인장강도시험편 등	각 4 개	
피난유도선	축광식	완성품	10 개	
	광원점등식	제어부	6 개	
		표시부	최대사용길이 2 조	표준단위길이 20 개
			축전지	6 개
		난연성능시험편	각 1 조	
		제어부 및 표시부 접속 부품 등	6 조	
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		시험설비	각 1 세트	
		부속품	각 1 조	
		설계프로그램	2 세트	
		설계매뉴얼	2 세트	
다수인피난장비		완성품	6 개	
		부분품	각 1조	
		인장강도시험편	각 4개	
캐비닛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		완성품	1세트	
		배관 및 부속품	각 1조	
승강식피난기		완성품	1세트	
		부분품	각 1조	
방열복		완성품	5개	
		부분품(시험편 등)	각 4개	
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		시험설비	각 1세트	
		부속품	각 1조	
		설계매뉴얼	2세트	
플랩댐퍼		완성품	5개	
		인장강도 시험편	각 4개	
비상문자동개폐장치		완성품	6개	
간이형 수신기		완성품	4회선분 이상 (해당 중계부, 감지기 및 가스누설경보기	

			포함)
	부분품	종단기	해당되는 것 각 3개
		예비 전원	
방화포	완성품 또는 직물		5개 또는 20 m
간이소화장치	완성품		1개
	인장강도 및 화학분석 시험편		각 4개
	염수분무시험편		1개
유량측정장치	완성품		5개
	금속시험편	- 인장강도 - 화학분석	각 4개
	고무시험편	- 인장강도 (노화전, 후) - 내유성	각 4개
배출댐퍼	완성품		5개
송수구	완성품		10개
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	완성품		8개
	스위치		각 2개
휴대용 비상조명등	완성품		6세트
	전구		6개
	축전지 (축전지식에 한함)		4조
	건전지 (건전지식에 한함)		16조
소방전원 공급장치	완성품		4개
	부분품	외 함	1개
		예비 전원	4개
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	완성품 (시험 등 별도제출)		6개
과압배출구	완성품		5개
	인장강도 시험편		각 4개
흔들림 방지 버팀대	완성품		10개
	부분품(시험 등)		1개

소방용 수격흡수기	완성품	5개
	부분품(시편 등)	각 4개
	부분품(비금속재료)	2개
소방용 행가	완성품	5개
	부분품	각 2조

수출용 소방용품의 합격표시(제3조 관련)

표시의 양식	표시의 작도
	

비고

1. 표시의 크기 및 기타 표시방법은 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2. 합격표시가 증지류의 경우 표시는 청색으로 한다.
3. 제조자는 합격표시 부근에 수출용임을 명기하여야 한다.